



# 평택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) 및 같은 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해위)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, 행위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「행정대집행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,
3.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평택시 공고 제2021-158호 1부.  
 2.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.  
 3. 평택시 용이동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
## 평택시



수신자 전국국토관리사무소, 전국시군구, 한국도로관리공사장

주무관	<b>이오영</b>	도로허가시설 팀장	<b>한준희</b>	도로관리과장	<b>한준수</b>	전결 2021. 1. 15.
협조자						
시행		(2021. 1. 15.)		접수	구조물과-401	(2021. 1. 15.)
우 17901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, (비전동)			/ www.pyeongtaek.go.kr		

전화번호 031)-8024-4824 팩스번호 031)-8024-4789 / leeoy25@pyeongtaek.go.kr / 대국민 공개